

##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eache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t Child Care Centers

박소연<sup>1</sup> 조인주<sup>2</sup>

So Yeon Park<sup>1</sup> In Ju Cho<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eache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teachers at child care centers in the Jeonbuk region,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 this study, 186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respondents reported thei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s follows: physical abuse(49.5%), emotional abuse(16.1%), sexual abuse(12.9%), and neglect(15.6%). The multipl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participation at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programs and awareness of reporting procedur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eache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t child care centers in Model 2. Also, attitudes towards reporting child abus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eache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in Model 3.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evaluating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programs more accurately because the responde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mean scores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an who participated(1.83 vs .85). In addition, educational programs about child abuse for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need to focus on changes in attitudes towards reporting child abuse, which in turn can change behavior.

#### <sup>1</sup> 제1저자

제주신화월드 어린이집 원장

#### <sup>2</sup>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부교수  
(e-mail : injucho@wku.ac.kr)

**key words** childcare teacher, child abus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ttitudes towards reporting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 I. 서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도 성인과 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에서부터 영아 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

동학대 사건들을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될 만큼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학대를 받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영유아 학대의 피해는 더욱 우려된다(임선희, 2014).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에서 제시한 2016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9,674건이었고, 그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25,878건이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 중, 0~6세의 피해아동이 4,778명으로 전체의 26.5%에 해당되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18,700 아동학대 사례 중,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례는 50건이었고, 그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 사망이 23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였다. 한국 사회에서의 영유아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사망한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의 72%가 친부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전수 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신고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크게 의료인, 교육,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의 3직군 하에 26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교육직군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사, 학원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가 해당된다. 2016년도에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가장 많이 신고한 직군은 3,978건을 신고한 초·중·고교 직원이었고, 그 다음은 815건을 신고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95건을 신고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한편, 보육교직원은 286건을 신고하였고,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는 114건을 신고하여 타 직군에 비해 신고율이 매우 낮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7,080만원으로 53건에 해당되었다(메디컬월드뉴스, 2017. 10. 16.). 구체적으로, 2012년에는 0건, 2013년은 2건, 2014년은 10건, 2015년은 21건, 2016년은 20건이었다. 신고의무자 직군 별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15건으로 28.3%, 어린이집 교사가 24건으로 45.3%, 초·중·등교사가 6건으로 11.3%, 기타가 8건으로 15.1%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전체의 73.6%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신고의무를 가장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신고교육 의무기관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로 정하고 소속 기관 및 시설 장이 아동학대 신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신고의무 교육 시간은 매년 1시간 이상이며,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법,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는 방법,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법에 의해 아동을 폭력과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회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보호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 아동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체계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체계 속에서 근무하는 아동 대상 전문가 중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으면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보육교사에 주목하였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의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보육교사의 낮은 신고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파악하고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관한 연구는 유아교사(강상, 유수정, 2014; 김수정, 이재연, 2013b; 김현주, 박미경, 2018; Feng, Huang, & Wang, 2010), 보육교사(유영의, 이진희, 임진형, 2013; 황인옥, 2015), 초중고교 교사(김수정, 2012; 김수정, 이재연, 2013a; 박미경, 김현주, 강명진, 2015; 최경일, 2011; Greytak, 2009; Walsh, Mathews, Rassafiani, Farrell, & Butler, 2012), 그리고 간호사(김진선, 박경숙, 2005; Ben Natan, Faour, Naamhah, Grinberg, & Klein-Kremer, 2012; Christodoulou, Abakoumkin, & Tseliou, 2019; Feng, 2003; Feng & Levine, 2005; Fraser, Mathews, Walsh, Chen, & Dunne, 2010)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간호사와 초중고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관련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Feng(2003)이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Ajzen(1991)은 행동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받는데,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계획행동이론을 주장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동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 즉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 Feng(2003)은 계획행동이론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행위는 신고의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검증한 것이다. Feng(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사례지식, 아동학대 신고 태도,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아동학대 지식을 제외한 아동학대 사례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학대 지식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신고의도가 낮은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강상, 유수정, 2014; 황인옥, 2015; Waldecker, 2009)이 있는 반면, 아동학대 지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다(김수정, 2012; 김수정, 이재연

2013a, 2013b; 김현주, 박미경, 2018; 박미경 등, 2015; Goebbels, Nicholson, Walsh, & De Vries, 2008; Greytak, 2009). 다수의 연구들은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했을 때 아동과 아동 가족, 그리고 교사 자신에게 미칠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견지할수록 신고의도가 낮은 결과를 일관적으로 제시했다(강상, 유수정, 2014; 김수정, 2012; 김수정, 이재연, 2013a, 2013b; 황인옥, 2015; Kenny, 2001; Costello, 2009). 즉,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낮아 아동학대 신고태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Hinson과 Fossey(2000)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 학교 직원들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선생님들보다 더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김수정(2012), 김수정과 이재연(2013a, 2013b), Feng(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황인옥, 2015; Greytak, 2009)들도 있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김현주와 박미경(2018), 박미경 등(2015), Feng(2003), Feng과 Wu(2005), Feng과 Levine(200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위통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행위통제란 아동학대 신고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감 정도를 의미한다. 위 연구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행위에 대한 자신감인 지각된 행위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김진선과 박경숙(2005)은 지각된 행위통제가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하여 연구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Lee(2008)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된 개념을 지각된 행위통제 대신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Lee(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설명하였다. 효능기대감은 아동학대 신고를 업무 우선순위로 두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동료 지원하기, 신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였다. 결과기대감은 신고로 인한 아동이나 가족의 이익과 아동 보호서비스기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수정(2012), 김수정과 이재연(2013a), Waldecker(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김수정과 이재연(2013b), Goebbels 등(2008), Greytak(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신고에 대한 자신감의 개념은 지각된 행위통제와 자기효능감으로 파악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 또는 자기효능감 이외에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연구 결과는 상이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유의한 영향력을 보고한 변수는 성별(Webster, O'Toole, O'Toole, & Lucal, 2005), 교사 경력(Kenny, 2001; Goebbels et al., 2008), 결혼상태(Webster et al., 2005) 등이 있었다. 즉,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았고(Webster et al., 2005), 교사경력이 5년 정도가 교사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신고의도가 높았으며(Kenny, 2001), 기혼인 교사가 미혼의 경우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Webster et al., 2005). 국내에서는 황인옥(2015)의 연구에서는 연령은 30대가 50세 이상 보다, 학력은 4년제 대졸이 고졸보다, 보육교사 경력은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이 1년 이상-3년 미만 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았다. 그러나 연령(강상, 유수정, 2014; 김현주, 박미경, 2018; 박미경 등, 2015), 학력(김수정, 2012; 김수정, 이재연, 2013a, 2013b; 강상, 유수정, 2014), 근무경력(김수정, 2012; 김수정, 이재연, 2013a, 2013b; 강상, 유수정, 2014; 김현주, 박미경, 2018; 박미경 등, 2015)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 신고 내용과 절차 등의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박미경 등(2015)과 황인옥(2015)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 유무와 교육시간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김수정, 이재연, 2012b; 강상, 유수정, 2014; 김현주, 박미경, 2018)도 있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관련 특성, 그리고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신고 태도,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또는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 요인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결혼상태, 근무경력 변수를 선정하였고, 교육 관련 특성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경험, 교육시간, 아동학대 신고제 인지, 아동학대 사례 인식 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아동학대 지식, 신고에 대한 태도,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 신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아동학대 신고의도 예측 요인으로 검증되기 시작한 자기효능감 변수를 지각된 행위통제 대신 선정하여 이에 대해 추가 검증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관련 특성,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신고 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이해하고 아동학대 신고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 신고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관련 특성, 아동학대 지식, 신고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86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자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여 연구 참여를 허락한 기관과 약속 일시를 정하였다. 정해진 일시에 방문한 연구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연구와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대상자들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연구자가 어린이집에 추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담당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7월에서 8월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20-29세가 15.6%(29명), 30-39세가 31.2%(58명), 40-49세가 46.2%(86명), 50세 이상이 7%(13명)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4.8%(9명), 전문대졸이 48.9%(91명), 대졸이 39.8%(74명), 대학원 이상이 6.5%(12명)로 전문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79%(147명)로 미혼의 21%(39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8.1%(15명), 1-3년 미만이 19.4%(36명), 3-5년 미만이 20.4%(38명), 5-7년 미만이 32.3%(60명), 7년 이상이 19.9%(37명)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아동학대 신고의도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Feng(2003)이 개발하고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학대 신고의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eng(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의 사례를 각각 2개씩 총 8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8개의 사례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 사례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 관련 아동학대 내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사례 중 영유아학대와 관련이 있는 4개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사례 내용 중 '학생'의 용어를 '영아' 혹은 '유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이 각각의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응답은 '(1) 아동학대 예방센터(112)에 신고한다, (2) 신고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다. 조사된 응답은 '0=신고하지 않는다, 1=신고한다'로 재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도 점수 범위는 0-4점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신고의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76으로 나타났다.

## 2)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지식은 Feng(2003)이 개발하고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아동학대 지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지식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예'와 '2=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지식은 조사된 응답이 오답은 0점, 정답은 1점으로 재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지식 점수 범위는 0-9점이다. 아동학대 지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태도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태도(신고태도)는 Fraser 등(2010)이 개발하고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태도 척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태도의 점수 범위는 11-55점이다. 아동학대 신고태도 문항은 '나는 신고를 함으로써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렵다'와 같이 모두 부정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신고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행동에 대해 교사 자신이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3으로 나타났다.

## 4)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주관적 규범)은 Greytak(2009)이 개발하고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 점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 연구대상자는 동료교사나 원감, 원장 등으로부터 사회적 압력을 크게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6으로 나타났다.

## 5)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은 Greytak(2009)이 개발하고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 점수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인식과 신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8로 나타났다.

6) 교육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교육 관련 특성은 교육경험, 교육시간, 아동학대 신고제 인지 유무, 아동학대 사례 인식, 아동학대 지식으로 파악하였다. 교육경험은 유무는 ‘1=있다, 2=없다’로, 교육시간은 ‘(1) 1시간 이하, (2) 2-4시간, (3) 5-7시간, (4) 8-10시간, (5) 11시간 이상’으로 조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제 인지는 ‘선생님은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 신고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의 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예, (2) 아니오’로 조사하였다.

아동학대 사례 인식은 Feng(2003)이 개발하고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학대 신고의도 척도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의 4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에 대해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예, (2) 아니오’로 하였다. 아동학대 사례 인식 점수 범위는 0-4점이다. 아동학대 사례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6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변수의 특성을 최소점수, 최고 점수, 평균, 표준편차로 살펴보았다. 둘째, t-검증, ANOVA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학대 유형 별 신고의도

표 1은 연구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신체적 학대에 대해 신고한다가 49.5%(92명), 신고 안한다가 50.5%(94명)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고한다가 16.1%(30명), 신고 안한다가 83.9%(156명)로 나타났으며, 성적 학대는 신고한다가 12.9%(24명), 신고 안한다가 87.1%(162명)로 나타났다. 방임은 신고한다가 15.6%(29명), 신고 안한다가 84.4%(157명)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의도가 가장 높았으나 연구 대상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표 1. 아동학대 유형 별 신고의도 (N = 186)

학대 유형	신고한다		신고 안한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신체적 학대	92	49.5	94	50.5
정서적 학대	30	16.1	156	83.9
성적 학대	24	12.9	162	87.1
방임	29	15.6	157	84.4



## 2.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표 2는 본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0-4점의 가능 점수 범위에서 최소 점수는 0점이고 최대 점수는 4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94(표준편차 = 1.2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중간점수 아래로 나타나 신고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학대 사례인식은 0-4점의 범위에서 최소 점수가 0점, 최대 점수는 4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69(표준편차 = .67)로 나타나 중간점수 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즉, 연구 대상자들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인식도는 높았으나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의도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아동학대 지식은 0-9점의 가능 점수 범위에서 최소 점수는 3점이고 최대 점수는 9점이며, 평균은 6.49(표준편차 = 1.27)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가능점수범위	실제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아동학대 신고의도	0-4	0-4	.94	1.24
아동학대 사례인식	0-4	0-4	3.69	.67
아동학대 지식	0-9	3-9	6.49	1.27
신고태도	11-55	11-46	30.01	6.53
주관적 규범	9-45	9-45	33.85	7.98
자기효능감	8-40	19-40	38.76	4.16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는 11-55점의 점수 범위에서 최소 점수는 11점, 최고 점수는 46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0.01(표준편차 = 6.5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9-45점의 점수 범위에서 최소 점수는 9점, 최고 점수는 45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3.85(표준편차=7.98)로 중간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8-40점의 점수 범위에서 최소 점수는 19점, 최고 점수는 40점, 평균은 38.76(4.16)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중간 수준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 변수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 차이 분석

표 3은 본 연구 변수에 따른 신고의도 차이 분석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및 교육 관련 특성과 신고의도와와의 차이분석 결과 교육경험( $t = 3.29, p < .001$ )과 신고제 인지( $t = -2.87, p < .05$ )가 신고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은 교육경험이 없는 연구 대상자의 신고의도 평균(1.83)이 교육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의 평균(.8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신고제 인지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제를 알고 있는 경우의 신고의도 평균이 .97로 모르고 있는 연구 대상자의 평균 .38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구 변수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 차이 분석

변 수	범주 또는 범위	신 고 의 도				
		빈도(명)	평 균	표준편차	t 또는 F	p
연령대	20-29세	29	1.04	1.30	F= 1.69	p= .170
	30-39세	58	1.07	1.39		
	40-49세	86	.93	1.18		
	50세 이상	13	.23	.60		
학력	고졸 이하	9	.67	1.32	F= .84	p= .471
	전문대졸	91	1.08	1.37		
	대졸	74	.80	1.09		
	대학원 이상	12	1.00	1.13		
결혼상태	미혼	39	1.15	1.44	t= .20	p= .230
	기혼	147	.88	1.19		
근무경력	1년 미만	15	1.27	1.62	F= .48	p= .748
	1년-3년 미만	36	.75	1.16		
	3년-5년 미만	38	.92	1.24		
	5년-7년 미만	60	.98	1.20		
	7년 이상	37	.95	1.27		
교육경험	있음	168	.85	1.15	t= 3.29**	p= .001
	없음	18	1.83	1.72		
교육시간	1시간 이하	7	.57	.79	F= 1.81	p= .129
	2-4시간	58	1.10	1.24		
	5-7시간	40	.73	.85		
	8-10시간	43	.56	1.18		
	11시간 이상	20	1.05	1.32		
신고제 인지	예	178	.97	1.26	t= -2.87*	p= .015
	아니오	8	.38	.52		

\* $p < .05$ , \*\* $p < .01$ .

#### 4.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 지식( $r = .15, p < .05$ ), 주관적 규범( $r = .17, p < .05$ ), 자기효능감( $r = .26, p < .001$ )은 신고의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신고태도( $r = -.39, p < .001$ )는 신고의도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신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신고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아동학대 사례인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모든 상관계수가 .07 아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한 연구변수 모두 다중회귀분석 모델에 투입하기로 한다.

표 4.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N = 186)

	신고의도	사례인식	지식	신고태도	주관적규범	자기효능감
아동학대 신고의도	1					
아동학대 사례인식	-.06	1				
아동학대 지식	.15*	.06	1			
신고태도	-.39***	.09	-.27***	1		
주관적 규범	.17*	.01	.14	-.11	1	
자기효능감	.26***	.09	.25**	-.34***	.26***	1

\* $p < .05$ , \*\* $p < .01$ , \*\*\* $p < .001$ .

## 5.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 분석

표 5는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중 명목 변수인 결혼상태 변수를 제외하고 연령, 학력, 근무경력을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모델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 = 1.15, p = .332$ ).

모델 1에 교육 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한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 = 2.43, p < .05$ ),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예측하는데 10%의 설명력을 보였다( $R^2 = .10$ ). 모델 2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경험( $\beta = -.23, p < .01$ )은 부적으로, 신고제인지( $\beta = .17, p < .05$ )는 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연령, 학력, 근무경력, 교육시간, 아동학대 사례인식은 신고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 2에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신고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4개의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4.29, p < .001$ ). 모델 3은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예측하는데 23%의 설명력을 보여( $R^2 = .23$ ) 모델 2보다 14%( $R^2$  증가량 = .1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모델 3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신고태도( $\beta = -.29, p < .001$ )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연령, 학력, 근무경력, 교육경험, 교육시간, 신고제인지, 아동학대 사례인식, 아동학대 지식,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은 신고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 분석

(N = 186)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beta$	B	$\beta$	B	$\beta$
연령 <sup>1)</sup>	-.22	-.15	-.20	-.13	-.09	-.06
학력 <sup>2)</sup>	-.08	-.04	-.07	-.04	-.04	-.02
근무경력 <sup>3)</sup>	.06	.06	.14	.14	.13	.13
교육경험 <sup>4)</sup>			-1.03	-.23**	-.54	-.12
교육시간 <sup>5)</sup>			-.11	-.10	-.12	-.11
신고제인지 <sup>6)</sup>			1.00	.17*	.43	.07
아동학대 사례인식			-.11	-.06	-.11	-.06
아동학대 지식					.02	.02
신고태도					-.06	-.29***
주관적 규범					.02	.12
자기효능감					.03	.11
$R^2$	.02		.10		.23	
$R^2$ 증가량	-		.08		.14	
F value	1.15		2.43*		4.29***	
p	.332		.021		.000	

<sup>1)</sup> 연령: '1=20-29세,' '2=30-39세,' '3=40-49세,' '4=50세 이상'

<sup>2)</sup> 학력: '1=고졸이하,' '2=전문대졸,' '3=대졸,' '4=대학원 이상'

<sup>3)</sup> 근무경력: '1=1년 미만,' '2=1년-3년 미만,' '3=3년-5년 미만,' '4=5년-7년 미만,' '5=7년 이상'

<sup>4)</sup> 교육경험: '0=없음,' '1=있음'

<sup>5)</sup> 교육시간: '1=1시간 이하,' '2=2-4시간,' '3=5-7시간,' '4=8-10시간,' '5=11시간 이상'

<sup>6)</sup> 신고제 인지: '0=아니오,' '1=예'

\* $p < .05$ ,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의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과 신고의도와의 관련성을 차이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지식, 신고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신고의도와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센터(112)에 신고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신체적 학대 49.5%, 정서적 학대 16.1%, 성적 학대 12.9%, 방임 15.6%에 해당했다. 즉, 신고의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으로 신고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구사회학적 및 교육 관련 특성 변인 중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교육경험과 신고제 인지로 나타났다. 교육경험은 신고의도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경험이 없는 연구 대상자의 신고의도가 교육 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았다. 신고제 인지는 신고의도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학대 신고제를 인지하는 연구 대상자의 신고의도가 인지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3)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 신고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동학대 지식,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신고태도는 신고의도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신고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4)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관련 특성, 아동학대 지식,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교육 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교육 경험과 신고제 인지는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 경험은 신고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 대상자의 신고의도가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고제 인지는 신고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제를 알고 있는 연구 대상자의 신고의도가 모르는 대상자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모델 2에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신고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의 변수를 투입한 모델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신고태도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신고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신체학대의 신고의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고한 강상과 유수정(2014), 김수정과 이재연(2013a, 2013b)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신체학대 신고의도 비율이 다른 아동학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신체적 학대의 명백한 징후가 사례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19개월 된 영아의 얼굴에 멍이 들고 골절된 늑골이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심각한 사례의 경우 신고의도가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정서학대의 신고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했는데(김수정, 이재연, 2013a, 2013b; Feng, 2003; Greytak, 2009),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신고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대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경험과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는 영유아들의 성학대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너무 어려서 성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것이며, 정상적이

거나 사랑받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성학대는 발견하기가 어려워 심각한 학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징후에 민감성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로 인식한 비율과 신고의도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 사례인식 수준을 각 사례 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 98.4%, 정서적 학대 92.5%, 성적 학대 81.2%, 방임 96.8%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방임, 정서학대,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사례 별 신고의도는 신체적 학대 49.5%, 정서적 학대 16.1%, 성적 학대 12.9%, 방임 15.6%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지만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할 의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동학대 사례인식과 신고의도 비율의 차이를 각 학대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는 48.9%, 정서적 학대는 76.4%, 성적 학대는 68.3%, 방임은 81.2%로 분석되었다. 즉, 방임과 정서학대 순으로 아동학대 인식률은 높으나 신고의도가 낮았다. 김수정(2012)은 방임과 정서학대의 경우,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더 많은 의심사례가 발견되지만 신고율이 저조함을 지적하였다.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에 의하면, 아동학대 유형 중 중박학대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가 19.2%, 방임이 15.6%, 신체적 학대가 14.5%, 성적 학대가 2.6%의 순으로 나타나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인식과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지식,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신고에 관한 태도는 신고의도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전 충남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지식, 신고태도, 신고효능감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한 강상과 유수정(20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아동학대 지식, 신고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김수정과 이재연(2013a, 2013b)과 황인옥(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통제 개념과 유사한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는데 자기효능감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넷째, 교육경험은 신고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보다 신고의도가 높았다. 이는 차이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학대 교육에 참여한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 비해 높은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박미경 등(2015)과 황인옥(2015)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박미경 등(2015)과 황인옥(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교육의 효과로 신고의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교육의 활성화를 제언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아동학대 법적 신고의무자 8개 직종인 초등, 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학원 및 교습소 교사, 의사 및 간호사, 구급대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 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91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검증한 조윤정과 신혜령(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조윤정과 신혜령(2013)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경험에 참여한 집단의 신고의도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결과를 제시하면서 교육을 받은 후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내용과 질에 대한 재검토와 교육경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신고제 인지는 신고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 신고제를 알고 있는 보육교사가 알지 못하는 보육교사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초중고교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한 박미경 등(201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 변인만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신고제 인지의 영향력이 나타났으나 모든 연구변수를 투입한 모델 3에서는 신고제 인지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박미경 등(2015)의 연구에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특성, 아동학대 지식, 신고효과성, 행위통제 등의 모든 변수를 한 모델로 분석하여 신고제도 인지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된 연구 결과이다. 이를 통해, 배경 변인을 고려할 때에는 신고제 인지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식과 태도 등의 변수 등을 같이 고려할 때에는 그 영향력이 상실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가 신고의도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신고의도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학대 신고태도는 신고의도의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강상, 유수정, 2014; 김수정, 2012; 김수정, 이재연, 2013a, 2013b; 황인옥, 2015; Costello, 2009; Feng, 2003; Kenny, 2001)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는 아동학대 지식보다는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될 때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보복이나 비난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는 신고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법, 절차 등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아동 대상 전문가들의 신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교육에 신고의 효과성 또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

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제언한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내용이 포함되면 신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인식 수준을 신고의무자에게 기대해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의 아동학대 신고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신고 후 아동과 신고자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당연시 되어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의 아동학대 의심사건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교사와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서 낙인 효과가 생겨 자칫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한국의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비율이 29%로 나타나 호주의 73%, 일본의 68%, 미국의 58%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는데(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타국에 비해 한국의 신고의무자의 낮은 신고비율은 사회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확대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사회 전반에서 인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이제는 기존의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나 폐해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 또는 발생 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하며 의미 있는 일임을 강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양명자, 2016).

둘째,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효과성 점검과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신고의도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보육교사보다 낮았다. 아동학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 대상자의 수가 18명으로 작은 수에 해당되어 본 연구 결과를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적용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바탕 하여 아동학대 교육 참여 후에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수정과 이재연(2013b), 강상과 유수정(2014), 김현주와 박미경(2018)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교육 참여 유무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학대 교육 참여가 아동 관련 전문가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하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에 아동학대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효과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제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의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추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동학대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유형 별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신고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감정과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제언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먼저,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보육교사로 연구 대상자를 제한하여 연구 결과를 전국의 보육교사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보육교사를 모집단으로 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검증하는데 횡단조사자료를 이용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정확한 영향요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원칙도를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황에 맞게 축약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상, 유수정 (2014).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145-165.
- 김수정 (2012).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이재연 (2013a).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회지**, **34**(3), 39-58.
- 김수정, 이재연 (2013b).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과 권리**, **17**(2), 205-228.
- 김진선, 박경숙 (2005).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2), 211-220.
- 김현주, 박미경 (2018).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 요인. **아동과 권리**, **22**(2), 127-144. doi:10.21459/kccr.2018.22.2.127
- 메디컬월드뉴스. (2017. 10. 16).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75&page=16&page=16](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75&page=16&page=16) 에서 2019년 3월 2일 인출
- 박미경, 김현주, 강명진 (2015).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115-135.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양명자 (2016).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인식이 신고의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1**(1), 21-49.
- 유영의, 이진희, 임진형 (2013).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신고에 대한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2**(3), 123-147.
- 임선희 (2014).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규제 평가에 관한 연구-서울소재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정, 신혜령 (20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차이 및 신고 행동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4**, 213-237.
- 최경일 (2011).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3**(1), 27-46.
- 황인옥 (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교육**, **24**(3), 329-345.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doi:10.1016/0749-5978(91)90020-T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 Review*, 84(2), 191-215. doi:10.1037/0033-295X.84.2.191
- Ben Natan, M., Faour, C., Naamah, S., Grinberg, K., & Klein-Kremer, A. (2012). Factors affecting medical and nursing staff reporting of child abus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3), 331-337. doi:10.1111/j.1466-7657.2012.00988.x
- Christodoulou, A. D., Abakoumkin, G., & Tseliou, E. (2019). Teachers' intention to report child maltreatment: Testing theoretically derived predictions. *Child & Youth Care Forum*, 1-15. doi:10.1007/s10566-019-09492-x
- Costello, L. H. (2009). A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child maltreatment and mandatory repor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USA.
- Feng, J. Y.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USA.
- Feng, J. Y., Huang, T. Y., & Wang, C. J. (2010).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 of reporting child abuse in Taiwan. *Child Abuse and Neglect*, 34(2), 124-128. doi:10.1016/j.chiabu.2009.05.007
- Feng, J. Y. & Levine, M.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Child Abuse and Neglect*, 29(7), 783-795. doi:10.1016/j.chiabu.2004.11.006
- Fraser, J. A., Mathews, B., Walsh, K., Chen, L., & Dunne, M. (2010).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cognition and reporting by nurses: A multivariat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2), 146-153. doi:10.1016/j.ijnurstu.2009.05.015
- Feng, J. Y. & Wu, Y. W. B. (2005).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in Taiwan: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8(4), 337-347. doi:10.1002/nur.20087
- Goebbels, A. F. G., Nicholson, J. M., Walsh, K., & De Vries, H. (2008). Teachers' reporting of suspected child abuse and neglect: Behaviour and determinants. *Health Education Research*, 23(6), 941-951. doi:10.1093/her/cyn030
- Greytak, E. A. (2009). Are teachers prepared? Predictors of teachers' readiness to serve as mandated reporters of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USA.
- Hinson, J. & Fossey, R. (2000). Child abuse: What teachers in the '90s know, think, and do. *Journal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at Risk*, 5(3), 251-266. doi:10.1207/S15327671ESPR0503\_4
- Kenny, M. C. (2001). Child abuse reporting: Teachers' perceived deter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5(1), 81-92. doi:10.1016/S0145-2134(00)00218-0
- Lee, P. Y. (2008).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mong nurses in Taiwan: professional knowledge, perceptions, attitudes,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land Univer-

- sity of Technology, Brisbane, Australia.
- Walsh, K., Mathews, B., Rassafiani, M., Farrell, A., & Butler, D. (2012). Understanding teachers' reporting of child sexual abuse: Measurement methods matte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9), 1937-1946. doi:10.1016/j.childyouth.2012.06.004
- Waldecker, C. E. (2009). Predicting child abuse reporting practices among school psychologis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John's University, New York, USA.
- Webster, S. W., O'Toole, R., O'Toole, A. W., & Lucal, B. (2005). Overreporting and underreporting of child abuse: Teachers'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Child abuse & Neglect, 29*(11), 1281-1296. doi:10.1016/j.chiabu.2004.02.007

논문투고: 19.03.12  
수정원고접수: 19.04.01  
최종게재결정: 19.04.16